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00587]

perfect9468@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naver.com

2021.05****.12]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4.09.20]

[카레온]

정 보 공 개 서

[카레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카레온 가맹본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부산시 남구 용소로 7번길 80,2층 (대연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899-971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카레온 가맹본부	카레온외 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번길 80, 2층 (대연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개인사업자	2020.3.2	노경환	1899 - 9716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649-31-00828

(카레온 가맹본부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상의 노경환 함수현 대표님에서 노경환 대표님으로 2021년 07년 12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카레온]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카레온	
상 호	카레온 OO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01473460000 등록일자 : 2020.04.29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제외)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87,861	-	-
2022년	-	-	-	78,604	-	-
2023년	-	-	-	165,209	-	-

(카레온 가맹본부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노경환	대표	2021. 3.2~	대표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카레온]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카레온가 맹본부	규심	20215370	일식	0/0	0/0	0/0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카레온	간판,인테리어 및 상표권 판촉홍보	2019.04.19. 출원 2020.04.29. 등록	출원 제4020190053017 등록 제4014738460000	노경환	2030. 04.2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카레온] 가맹사업 현황

1. [카레온] 을 시작한 날: 2019.02.14

2. [카레온]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카레온 가맹본부	카레온	노경환 함수현	2020.3.2.2021.07.1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26, 3층 303호 (범일동,비건빌딩)
		노경환	2021.07.12~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번길 80, 2층 (대연동)

3. [카레온] 업종

영업표지	업종	
카레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수비드 갈비 카레온, 새우 코코넛크림 카레온 카레온 우삼겹 카레온 차슈 카레온 닭가슴살 카레온 오므 카레온 카레 우동 야채 카레온 핫커리우동 크림 카레 우동 돈까스 카레온 왕새우튀김 카레온 리얼 치즈카츠 카레온 고가새 카레온 고로케 카레온 가라아게 카레온 소시지 카레온 카레탕 카레 교자만두 카레 치킨 모듬 튀김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카레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	11	1	12	11	1	11	10	1
서울	-	-	-	-	-	-	4	4	-
부산	7	6	1	7	6	1	4	3	1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1	1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1	1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1	1	-
경남	3	3	-	2	2	-	-	-	-
제주	-	-	-	1	1	-	1	1	-

5. 바로 전 3년간 [카레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2	3	-	4	-	11
2022	11	4	-	4	-	11
2023	11	5	-	6	-	10

6. [카레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카레온]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카레온] 가맹사업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0	136,346	16,361	420,000	115,500	49,324	1,060	
서울	4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부산	3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대구		해당없음	-	-	-	-	-	
인천		해당없음	-	-	-	-	-	
광주		해당없음	-	-	-	-	-	
대전		해당없음	-	-	-	-	-	
울산		해당없음	-	-	-	-	-	
세종		해당없음	-	-	-	-	-	
경기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강원		해당없음	-	-	-	-	-	
충북		해당없음	-	-	-	-	-	
충남		해당없음	-	-	-	-	-	
전북		해당없음	-	-	-	-	-	
전남		해당없음	-	-	-	-	-	
경북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경남		해당없음	-	-	-	-	-	
제주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연간 평균매출액 환산매출산정시 가맹점의 영업일수를 실제매출액으로 나누어 일년 치 환산매출액을 구하므로 실제매출과 상이 할수 있습니다.)

8. [카레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카레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0	55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카레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카레온]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우리은행 범일동지점	부산시 동구 진시장로 16	051-646-5021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공정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카레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금액 없음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입비	3,300	계약 체결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 되지 않음
교육비	2,200	계약 체결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가맹점 교육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5,500
가입비	3,300
교육비	2,2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0,160	3,344	계약시	반환되지 않음	49.5㎡ 기준
필수설비 (정착물)	가맹본부	50,000	3,333	계약시	반환되지 않음	
인테리어 (내장공사)						
최초 공급 상품 비용 (특제소스)		160	11	오픈후 발주	오픈시 반환되지 않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비용		없음	없음	없음	해당없음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계약 체결 시 일시불로 계약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 가맹점 체결 및 당사 금전 입금 후 해약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 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별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 약 요 청 일 자	위 약 별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100%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실제 발생비용 전액
계약 체결 후 교육의 시행	교육비 전액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110	매월 1일	없음	상표권 사용료로 소멸성비용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실시10일전			교육필요시 협의하여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하여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해당업체	해당업체와 협의				교체, 보수필요시 시설, 기기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 비용	해당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비용		해당없음				
회계 처리비용		해당없음				
POS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0~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 기한을

			날까지			경과했을 시 부담
--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카레온 가맹본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카레온 가맹본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카레온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이백이십만원 (2,200,000)(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가맹계약서 제 25조 참조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카레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당사는 2020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카레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 용역 만을 공급해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새우코코넛크림 카레온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은 판매 할 수 없음	가맹계약서 제36조 참조	
수비드갈비 카레온			
야끼 카레온			
트리플오일버섯 카레온			
함박스테이크 카레온			
차슈 카레온			
우삼겹 카레온			
오므 카레온			
카레온			
카레우동			
야채 카레온			
닭가슴살버섯 카레온			
머슬 카레온			
해장 카레온			
두툽등심카츠 카레온			
두툽특등심카츠 카레온			
통안심카츠 카레온			
리얼치즈카츠 카레온			
치킨카츠 카레온			
치킨통안심카츠 카레온			
왕새우튀김 카레온			
돈까스 카레온			
고가새 카레온			
고로케 카레온			
가라아게 카레온			
소세지 카레온			
닭다리살 카레온			
등심 돈카츠			
특등심 돈카츠			
통안심카츠			
치즈카츠			
경양식 왕돈까스			
치킨카츠			
치킨통안심카츠			
치킨믹스카츠			
등심 가츠동			
특등심 가츠동			
통안심 가츠동			
치즈 가츠동			
소스 가츠동			
치킨 가츠동			
치킨통안심 가츠동			

치킨믹스 가츠동			
타닌동			
오야코동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새우코코넛크림 카레온	13,000	서면 통지	
수비드갈비 카레온	13,000	서면 통지	
야끼 카레온	12,000	서면 통지	
트리플오일버섯 카레온	11,000	서면 통지	
함박스테이크 카레온	11,000	서면 통지	
차슈 카레온	11,000	서면 통지	
우삼겹 카레온	10,000	서면 통지	
오므 카레온	10,000	서면 통지	
카레온	7,000	서면 통지	
카레우동	8,000	서면 통지	
야채 카레온	9,000	서면 통지	
닭가슴살버섯 카레온	9,000	서면 통지	
머슬 카레온	10,000	서면 통지	
해장 카레온	10,000	서면 통지	
두툽등심카츠 카레온	14,000	서면 통지	
두툽특등심카츠 카레온	16,000	서면 통지	
통안심카츠 카레온	11,000	서면 통지	
리얼치즈카츠 카레온	11,500	서면 통지	
치킨카츠 카레온	10,500	서면 통지	
치킨통안심카츠 카레온	11,000	서면 통지	
왕새우튀김 카레온	10,000	서면 통지	
돈까스 카레온	11,000	서면 통지	
고가새 카레온	10,000	서면 통지	
고로케 카레온	9,000	서면 통지	

가라아게 카레온	10,000	서면 통지	
소세지 카레온	9,500	서면 통지	
닭다리살 카레온	10,000	서면 통지	
등심 돈카츠	9,500	서면 통지	
특등심 돈카츠	11,000	서면 통지	
통안심카츠	10,500	서면 통지	
치즈카츠	11,000	서면 통지	
경양식 왕돈까스	12,000	서면 통지	
치킨카츠	9,500	서면 통지	
치킨통안심카츠	10,500	서면 통지	
치킨믹스카츠	10,000	서면 통지	
등심 가츠동	10,500	서면 통지	
특등심 가츠동	12,000	서면 통지	
통안심 가츠동	11,500	서면 통지	
치즈 가츠동	12,500	서면 통지	
소스 가츠동	10,500	서면 통지	
치킨 가츠동	10,500	서면 통지	
치킨통안심 가츠동	11,500	서면 통지	
치킨믹스 가츠동	11,000	서면 통지	
타닌동	8,000	서면 통지	
오야코동	8,000	서면 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카레 소소를 이용하여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가맹본부	계열회사
	카레온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1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카레온 가맹본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카레온’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카레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2%	18%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5조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5조3항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5조3항 나목
○ [카레온 가맹본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5조3항 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5조3항 다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가맹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25조 [상품 및 서비스공급 중단]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6조1항1목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비 ,영업허가, 기타 영업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36조1항2목
○ 약정한 상품/서비스의 주문,품질기준 준수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36조1항3목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및 서비스를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제36조1항4목
○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6조1항5목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6조1항6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 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6조2항1호
○ “가맹점사업자” 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6조2항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6조2항3호
○ 삭제	제36조2항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명령	제36조2항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제36조2항6호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초과)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명령 이후 1년 이내 같은 사항 재위반	제36조2항7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6조2항8호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6조2항9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6조2항10호

개점전 해약에 대한 위약금	관련 계약조문
○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제39조
○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제39조
○ 계약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에 “가맹점 사업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제39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카레온 가맹본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본부와 협의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협의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위탁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카레온 지역 내에서] 귀하가 [카레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카레온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2: 00	365일 연중 무휴 영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간의 협의 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

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 3 참고)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부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리감독 할 수있음	카레온 가맹본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부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리감독 할 수있음	카레온 가맹본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카레온 영업포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

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관련 계약조문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4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삼천만원 (₩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해지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카레온]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 (₩30,000,000)을 지급하여야한다.	제46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영업비밀유지 의무,계약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삼천만원 (₩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4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종료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 삼십만원 (₩300,000원)씩 가맹본부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46조5항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가맹본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아 배상하기로 한다. 배상액은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일 x 오만원정(₩50,000)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한도는 금 이천만원정 (₩20,000,000원)으로 한다.	제46조6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일 내외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0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30 ~29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28~27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7	-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27(1일)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5(2일)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분쟁의 해결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의 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48조 1항
○ 당사자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48조 2항
○ “본 계약”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48조 3항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	

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카레온]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카레온 가맹본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11: 00 도착 11:00 ~ 12:00 재료준비 및 과정교육 12:00 ~14:00 플레이팅 셋팅 등 메뉴교육 14 :00 ~15: 00 음식 맛보기 및 식사 15 :00 ~17 :00 주의사항 및 이론적 교육 17 :00 ~18:00 마무리 및 가맹점 교육일정조율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가맹본부 1일 가맹점사업자사 업장에서 1일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카레온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일	2,200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 25조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중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부산	카레온	부산시 남구 용소로7번길 80, 1층(대연동)

[상기 직영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년 1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31,86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 3]

위생 관리 체크 리스트		
년 월 일 가맹점주 (서명 또는 인) / 가맹본부 (서명 또는 인)		체크
홀 , 화장실		
1. 홀 바닥 및 테이블, 의자 청소여부		
2. 테이블 수저, 수저통, 티슈 채움 및 청결여부		
3. 정수기 필터갈기 및 청소여부		
4. 카운터, 포스기 청소 및 정리정돈여부		
5. 청소도구 정위치 및 정리정돈여부		
6. 주류냉장고 청소 및 정리정돈 여부		
7. 물컵, 음료컵 청결여부		
8. 화장실에 화장지 채움 및 쓰레기통 비움 여부		
9.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 거울 청결여부		
10. 화장실 바닥, 배수구 청소여부		
11. 손세정제 비치 및 관리 여부		
주방		
1. 냉장고 냉장,냉동 성에 제거 및 적정온도 유지여부		
2. 튀김기 청결 및 기름 주기적 교체여부		
3. 카레, 밥, 국 스푼 청결여부		
4. 후라이팬, 냄비, 그릇 등 집기류 청결여부		
5. 도마, 칼, 가위 용도별 분리 사용여부		
6. 전자렌지는 내외부 및 돌림판까지 청소여부		
7. 식재료 유통기한 확인		
8. 식재료는 위생적으로 관리여부(보관용기, 포장상태 등)		
9. 1일 1회 주방 바닥청소 여부		
10. 수란 냄비 물 주기적 교체여부		
11. 화구 청소 주 2회이상 청소여부		
12. 식기세척기 세정제 유무 및 이틀에 한번 물 교체여부		
13. 청소도구 정위치 및 정리정돈여부		

가맹금에스크로서비스 이용약관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가맹본부”라 한다.)은 “은행”의 가맹금에스크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은행”과 “가맹본부”의 상호 협력사항 및 책임과 이행조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 및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4. “가맹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며 “법률”제2조 제6호에 정의된 바와 같다.
5. “은행”은 “가맹본부”와 “서비스” 이용약관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예치, 지급, 반환 및 지급보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 예치기관을 의미하며 본점과 영업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6. “서비스”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에 약정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예치받은 “가맹금”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또는 분쟁해결기관 등에 의해 결정된 정당한 권리자에게 “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하거나 지급보류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7. “회원”이라 함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8. “분쟁해결기관”이라 함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조정기관을 말한다.

9. “에스크로계좌”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은행”에 가맹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우리은행 명의의 자금관리계좌 또는 해당 자금관리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말한다.
10. “에스크로수수료”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은행”에게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② 이 계약서에서 정의된 용어의 적용범위는 이 계약 및 부속 세부계약서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적용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범위]

- ① “가맹금”의 수령 및 보관
- ② “회원”이 등록한 “가맹금” 정보에 따른 예치 “가맹금”의 관리 및 지급
- ③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의 정산 및 증계
- ④ “회원”의 정보 관리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입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 ⑤ “가맹금”의 처리내역 및 상태 정보
- ⑥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타 부가서비스

제4조 [책임과 의무]

- ① “은행”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가맹금”의 수령, 자금관리 및 정산업무
 2. “가맹금” 수령을 위한 “에스크로계좌”의 제공 및 관리
 3. “가맹금” 자금관리 및 정산업무에 대한 통지
 4. “서비스” 이용에 관한 현황 자료 등의 제공(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
- ② “가맹본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안내 및 가맹금예치신청서 교부
 2. “은행”에 “서비스”와 관련된 자금관리 및 정산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자금관리 및 정산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변경 발생 즉시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
 4. “은행”에 “서비스”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수수료 지급

제5조 [“가맹금”의 입금 및 예치증서 교부]

- 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입금은 “은행”이 제공한 “에스크로계좌”로 금융기관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입금하기로 한다.
- ② “은행”은 입금된 “가맹금”에 대해 “회원” 간에 약정한 금액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입금 요청한 금액 또는 입금한 금액으로 관리, 지급하기로 한다.
- ③ “은행”은 입금된 “가맹금”을 “회원”의 계좌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은행”의 에스크로 계정에 관리하기로 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 ④ “은행”은 “가맹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은행”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가맹금"의 지급]

- ① "가맹본부"는 "은행"에 예치된 "가맹금"을 지급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개시 증명서류와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와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요청한다.
 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경과 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서 사본 및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요청한다.
- ② "은행"은 "가맹본부"의 지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명의로 "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가맹금"을 지급하며, 이 때 "가맹본부"의 지급요청 의사표시 또는 우편물이 "은행"에 도달한 날을 지급요청일로 한다.
- ③ "은행"은 "가맹본부"의 지급요청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일 경우 지급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가맹금"의 지급보류 및 반환]

- ① "가맹점사업자"는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제소,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하거나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 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를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은행"은 "분쟁해결기관"의 조정 결과("법률" 제6조의 5 제5항에 의한다)가 있기 전까지 "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보류한다.
- ③ "은행"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예치가맹금 지급반환요청서에 첨부하여 예치 "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관"의 조정 결과에 따라 예치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예치가맹금 지급반환요청서와 첨부 서류가 "은행"에 도달한 날을 요청일로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확인서(즉, 동의서)와 예치가맹금 반환요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 때 예치가맹금 반환요청서와 첨부 서류가 "은행"에 도달한 날을 요청일로 한다.
- ⑤ "은행"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지급보류, 지급, 반환 요청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일 경우 지급보류, 지급, 반환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 ① "회원"은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회원"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회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인증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객 동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 ③ “은행”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 정보(예컨대 “가맹금”의 처리내역 등)에 대해 전화, 서면, 이메일, SMS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메일, SMS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 “회원”에게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④ “가맹금”이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은행”은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 후 원상대로 복구 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은행”의 원상 복구 이행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 체결]

- ① “가맹본부”는 “은행”의 승인 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② “가맹본부”는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진실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가맹본부”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좌의 지정]

“가맹금”을 지급할 “가맹본부” 명의의 예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예 금 주	예 금 과 목	계 좌 번 호

제11조 [“은행”의 책임 개시 및 종료]

- 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은행”의 책임 개시는 “가맹점사업자”가 “은행”이 제공한 “에스크로 계좌”에 “가맹금” 입금을 완료한 때 수령한 것으로 보아 책임이 개시된다.
- ② “은행”의 책임은 “회원” 본인이 수행한 지급요청, 환불요청 또는 “분쟁해결기관” 등의 결정문 등에 의해 “은행”이 “회원” 명의의 계좌로 예치 “가맹금” 입금을 완료한 때에 종료된다.

제12조 [“에스크로수수료”]

- ① “에스크로수수료”는 가맹금 예치 건당 10,000원으로 한다.
- ② “에스크로수수료”는 “은행”이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징구 대상이 되며, “가맹금” 지급 시 “에스크로수수료”를 차감하여 “가맹본부”에게 정산한다.
- ③ “에스크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기로 한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은행”의 영업점 창구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은행” 또는 관련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중단 및 이용시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은행”은 동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서비스”의 중단]

“은행”은 “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장애,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관리]

- ① “은행”은 “서비스”와 관련된 “회원”의 각종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를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 제공에 이용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본 업무처리를 통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업무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법령이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회원”의 정보 및 공인인증서 등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은행”의 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회원”간 가맹계약상 하자 및 불이행 등에 의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외부기관의 장애 등으로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서비스”의 지연 및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3. “은행”의 귀책 사유 없이 “회원”의 정보 및 각종 접근 수단의 외부 유출 등 관리상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회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회원” 간의 손해
-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요청 및 승인, 지급보류, 반환요청 및 승인 등 모든 거래를 “회원” 본인이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은 “은행”에 접수된 정보에 의해서만 “가맹금”을 보관, 관리, 지급한다. 이 경우 “회원”이 잘못 등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회원”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은행”은 분쟁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위나 책임에 대하여도 관여하지 않는다.
- ④ “은행”이 선의로 예치가맹금 지급반환요청서 및 영업개시 증명서, 가맹계약서 등 기타 관련 증빙서류들을 신뢰하고 그 지급요청에 응한 이상, 가맹계약서 등이 위조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급요청으로 인한 결과 등 일체의 위험으로부터 면책된다.
- ⑤ “은행”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공한 서류 및 신청서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한 지시 및 지침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행”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공한 서류 및 신청서 등에 대하여 진정성을 검증할 의무가 없으며 “은행”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⑥ 외부 감독당국 등의 시정명령, 지시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공통사항]

- ① “은행”과 “회원”은 이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은행”과 “회원”은 전산상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 쌍방간에 장애원인, 복구예정 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유/무선으로 통보하고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은행”과 “회원”은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사전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은행”과 “회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획득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⑤ 감독당국 또는 “은행”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감사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은행”과 “가맹본부”가 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9조 [계약기간 및 연장]

-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②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또는 조건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된다.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날의 익월 동일일에 변경하기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 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날의 익월 동일일에 해지하기로 한다.
- ③ 1년간 “가맹금” 예치실적이 전혀 없거나 “가맹본부”가 3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전 ① ~ ② 항에 의거 “서비스”의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예치 중인 “가맹금”이 있을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서비스”를 중지 또는 계약을 해



지하기로 한다.

- ① 이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최고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에 대한 회생절차·파산절차의 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재산보전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회사의 해산결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회사 주요재산의 양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사의 운영이 곤란한 정도의 노사분규, 기타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폭동, 소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위험과 손해를 부담한다.
- ② 제3항의 이행의 최고 및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되 상대방에 도달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제3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이행최고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약의 이행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고 별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 ④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이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이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계약종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유효하거나 발효되는 것으로 명시된 이 계약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2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 금지]

- ① “은행”과 “가맹본부”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가맹본부”는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제3자와 계약체결 시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기로 한다.

제23조 [지적재산권]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모델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모든 권리는 “은행”에게 있으며, “가맹본부”는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 [비밀유지]

- ① “은행”과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는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 ② “은행”과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각종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손해배상 책임]

- ① “회원”이 제출한 요청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가 허위나 거짓으로 판명되어 불법으로 예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은행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은행”과 상대방 “회원”의 모든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 ② “은행”과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③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고 또는 손해 발생시 책임 없는 일방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일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 [특약사항]

이 계약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제23조[지적재산권], 제24조[비밀유지] 및 제25조[손해배상 책임]은 계속 유효하다.

제27조 [추가계약]

이 계약서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부속 계약임을 명시한 별도의 세부계약서나 추가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계약서나 추가계약서는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8조 [클린계약] ①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제공, 향응제공,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행”이 “가맹본부”에게 입찰제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거래중단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도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과 “가맹본부”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30조 [적용법규]

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처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리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은행”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은행”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은행”과 “가맹본부”는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정신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은행”

우리은행 별일동지점



우리은행

“가맹본부” 카레온 노정호

카레온 함두연



[별첨 5]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6]

□ 가맹본부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가맹본부명	
•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기재 (가맹본부 사무실, oo 커피숍 내, 이메일 등)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요망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① ~ ⑥의 빈칸을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